

[총평]

최근 몇 년 동안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왔던 것에 비하여 2023년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시험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 기출문제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 대부분이 기출문제의 내용들에 포함되는 것들이었다. 다만, 최근의 판례인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내용을 물어보는 지문은 처음 출제된 것이었고, 기출문제의 내용에 포함되지는 하나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수량제한금지원칙의 예외”에 관한 문제,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관한 문제 등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각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고, 조문·이론·판례의 출제비율도 68% : 27% : 5% 정도로 기존의 출제비율을 벗어나지 않았다. 기출문제의 내용들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시험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반복하여 숙지하는 수험준비의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단원별 문항수 (원해광 편저 국제법강의 목차 기준)

제1편 국제법기초이론 : 2문

제2편 국가 : 3문

제3편 국제기구 : 3문

제4편 개인 : 2문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4문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2문

제7편 분쟁해결 : 2문

제8편 국제경제법 : 2문

1.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 ②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 ③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 ④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분류] 제4편 개인 - 제2장 외교적 보호 - 제2절 행사요건

[해설] ① [O] ③ [X] [조문, 이론] 외교보호초안 제15조 (a)호의 “실효적 보상을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수단이 없거나 혹은 국내구제수단이 실효적 보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국의 국내법원이 해당 분쟁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현지 법원이 독립성이 없기로 이미 악명 높은 경우,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대의 판례가 확고히 확립되어 있는 경우, 현지국이 적절한 사법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구제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내적 구제완료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 외교보호초안 제15조 【국내구제수단완료 원칙의 예외】

국내구제수단완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a) 실효적 보상을 제공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수

단이 없거나 혹은 국내구제수단이 실효적 보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b) 피고국가로 인해 기인한 구제절차의 부당한 지연
- (c) 침해 시점에서 피해자와 피고국가 간에 적절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 (d) 피해자가 국내구제수단으로 명백히 배제된 경우 혹은
- (e) 피고국가가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요구를 포기한 경우

② [O] [조문] 외교보호초안 제15조 (b)호.

④ [O] [조문] 외교보호초안 제15조 (d)호.

[정답] ③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상 선박의 지위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는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에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국가의 군함은 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 ② 공해에서 무허가방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의 군함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계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 ④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계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분류]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제1장 해양법 - 제2절 UN해양법협약

[해설] ① [X] [조문] UN해양법협약 제101조 (a)(i)호. 동일 선박 내의 승무원이나 승객 간의 행위는 해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UN해양법협약 제105조, 제107조.

▶ UN해양법협약 제101조 【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라 함은 다음 행위를 말한다.

- (a) 민간선박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 (i) 공해상의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
 - (ii) 국가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 (b) 어느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c) (a)와 (b)에 규정된 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행위

▶ UN해양법협약 제105조 【해적선·해적항공기의 나포】

모든 국가는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하며,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UN해양법협약 제107조 【해적행위를 이유로 나포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

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② [O] [조문] UN해양법협약 제109조 제3항, 제110조 제1항 (c)호.

▶ UN해양법협약 제109조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

3. 무허가방송에 중사하는 자는 다음 국가의 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

- (a) 선박의 기국
- (b) 시설의 등록국
- (c) 중사자의 국적국
- (d) 송신이 수신될 수 있는 국가
- (e)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

▶ UN해양법협약 제110조 【임검권】

1. 제95조와 제96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간섭행위가 조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a) 그 선박의 해적행위예의 중사
- (b) 그 선박의 노예거래예의 중사
- (c) 그 선박의 무허가방송예의 중사 및 군함 기국이 제109조에 따른 관할권 보유
- (d) 무국적선
- (e)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 보유

③ [O] [조문] UN해양법협약 제92조 제2항.

▶ UN해양법협약 제92조 【선박의 지위】

2.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④ [O] [조문] UN해양법협약 제90조.

▶ UN해양법협약 제90조 【항행의 권리】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①

3.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ㄴ.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ㄷ.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ㄹ.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분류] 제4편 개인 -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 제1절 범죄인인도

[해설] ㄱ. [X] ㄴ. [O] ㄷ. [O] ㄹ. [X] [조문] 범죄인인도법 제7조상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 이다. ㄱ, ㄹ 은 범죄인인도법 제9조상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범죄인인도법 제7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인인도법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조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부적법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 대표의 부정을 사유로 조약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사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에 동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② 기만을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부적법화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조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실의 착오 또는 법의 착오가 조약에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경우, 착오는 조약의 부적법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 ④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합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며, 분쟁 당사국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에 관한 분쟁의 결정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분류]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제2장 조약

[해설] ① [X]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5조 (a)호. 조약의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5조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그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하는 권리의 상실】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제46조 내지 제50조 또는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 (a) 경우에 따라 그 조약이 적법하다는 것 또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또는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그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 (b) 그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적법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0조 【국가대표의 부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에 의한 그 대표의 부정을 통하여 감행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부정을 원용할 수 있다.

② [X]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4조 제4항. 이 경우 조약 전체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4조 【조약 규정의 가분성】

4.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만 또는 부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또는 상기 3항에 따른 것으로 하여 특정의 조항에 관해서만 그렇게 원용할 수 있다.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9조 【기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③ [X]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8조 제1항. 법의 착오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8조 【착오】

1. 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④ [O]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6조 (a)호, 제53조.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6조 【사법적 해결 · 중재재판 및 조정을 위한 절차】

의의가 제기된 일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65조 제3항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a) 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 당사국은 제 당사국이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서면 신청으로써 부탁할 수 있다.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3조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64조 【일반국제법의 새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출현】

일반국제법의 새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정답] ④

5 5.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건지한다.
-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과한다.
- ③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 ④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

[분류]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제3장 국제환경법 -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해설] ① [O] [조문, 이론]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등에서 차별적 공동책임과 능력에 따른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X] [조문, 이론] 교토의정서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1의 당사국인 일부 선진국에 대하여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③ [O] [조문, 이론]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 등록부에 기록되고 국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④ [O] [조문, 이론]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약기간 5년 동안 1990년도 수준의 5% 이상 감축할 의무를 부과한다. 파리협정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산업혁명)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한다.

[정답] ②

6 6. 국제연합 회원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입’은 총회의 결정이 요구되며, 그 결정은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 ②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가 요구되며, 그 권고는 전체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 ③ ‘권리와 특권 행사의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 ④ ‘제명’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류] 제2편 국제기구 - 제2장 국제연합 - 제2절 UN헌장

[해설] ① [X] [조문] ② [X] [조문] 신회원국의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UN헌장 제4조 제2항).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국 포함 9개국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비절차문제(실질문제)이고(UN헌장 제27조 제3항), 총회에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중요문제에 해당한다(UN헌장 제18조 제2항).

▶ UN헌장 제4조

2. 그러한 국가의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UN헌장 제18조

2.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제86조 제1항 다호에 의한 신탁통치이사회의 이사국의 선출, 신회원국의 국제연합 가입의 승인,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특권의 정지, 회원국의 제명, 신탁통치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예산문제를 포함한다.

▶ UN헌장 제27조

3.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③ [X] [조문] 정지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UN헌장 제5조).

▶ UN헌장 제5조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④ [O] [조문] UN헌장 제6조.

▶ UN헌장 제6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정답] ④

7.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 ③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분류]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제2장 국제법의 법원

[해설] ① [X] [이론]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동등하며, 조약과 국제관습법 상호간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서는 ICJ의 재판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그 내용이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국제법의 법원 상호간의 효력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② [O] [이론] 국제관습법이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져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③ [O] [이론] 국제관습법의 증거로서의 국가의 행위에는 조약체결, 외교선언, 외교공문, 국제소송절차에서 정부대표가 취한 입장 등 국제관계에서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입법행위(법률), 행정행위, 사법행위(판결) 등 국내관계에서의 행위들도 모두 포함된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④ [O] [이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법에 관한 기존의 관습법규를 발전적 관점에서 법전화한 것이다.

[정답] ①

8.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할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없다.

③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상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이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이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분류] 제7편 분쟁해결 -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해설] ① [O] [조문]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ICJ규정 제34조 제1항).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ICJ규정 제35조 제1항).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UN헌장 제93조 제1항).

▶ ICJ규정 제34조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ICJ규정 제35조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 UN헌장 제93조

1.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② [X] [조문] ICJ규정 제36조 제3항.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 수 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 ICJ규정 제36조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3. 위에 규정된 선언은 무조건으로, 수 개 국가 또는 일정 국가와의 상호주의의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③ [O] [이론, 판례] ICJ규정상 확대관할권을 규정한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이는 PCIJ의 마브로마티스 양허사건(1924), ICJ의 코르푸 해협 사건(1948) 등의 재판소 실행을 통해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이후 1978년 ICJ규칙 제38조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명문화하였다.

④ [O] [이론, 판례]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실상 그 같은 선언은 일방적 행위이지만 동일한 강제관할의무를 수락하는 타 국가들과의 일련의 양자 간 약속(계약)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택조항 수락선언 그 자체는 일방적 행위이지만 선언들의 만남에 의해 국가 간 양자합의를 창설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답] ②

9.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 ② 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 ④ 국가의 외교공관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분류]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제2장 법원 - 제3절 국제관습법

[해설] ① [X] ④ [O] [이론] 국제관습법의 증거로서의 국가의 행위에는 조약체결, 외교선언, 외교공문, 국제소송절차에서 정부대표가 취한 입장 등 국제관계에서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입법행위(법률), 행정행위, 사법행위(판결) 등 국내관계에서의 행위들도 모두 포함된다. 외교공관(外交公館)은 외교상의 공적인 편지로서 국가의 실행에 해당하며, 국제관습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X] [이론] 국제관습법의 증거로서의 국제기구의 행위에는 내부적인 절차행위, 기관간의 행위, 규칙제정 행위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결의채택, 조약체결, 다른 국제법주체들과의 비공식적 실행들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행위는 독자적인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기구의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다.

③ [X] [이론, 판례] 국제연합과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결의나 일반적 결의는 국제관습법의 요건 중 하나인 “법적 확신”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관행의 성립” 없이 “법적 확신”만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인스턴트 관습법” 이론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ICJ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관습법 성립에 있어서 국가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답] ④

10 10. 국제법상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주관적 속지주의이다.
- 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속인주의이다.
- ㄷ. 복수 국가가 동일 행위를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ㄹ.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라도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분류] 제2편 국가 -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 제1절 국가관할권

[해설] ㄱ. [X] [이론] 행위의 개시지를 중심으로 관할권을 판단하는 것을 주관적 속지주의라 하고 행위의 결과발생지를 중심으로 관할권을 판단하는 것을 객관적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착수되었으나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는 객관적 속지주의가 된다.

ㄴ. [O] [이론] 행위의 장소에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한다.

ㄷ. [O] [이론] 국가관할권에 관한 제 원칙들은 필연적으로 경합(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지만, 국제법상 이러한 국가관할권의 경합을 해결하는 확립된 절차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ㄹ. [X] [이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그 행위자의 신병을 확보한 모든 국가에게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보편주의(보편적 관할권)라고 하며, 보편주의에는 “행위장소나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허용적 보편주의”와, “국가는 범인을 자국에서 소추·처벌하든지 아니면 다른 관계국에 인도해야 한다.”는 “의무적(강제적) 보편주의”가 있다. 의무적(강제적) 보편주의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약당사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관할권의 보편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조약에 ‘기소 또는 인도’의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조약의 당사국에 대해서만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

[정답] ③

11 11.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 ②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 ③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 ④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분류] 제2편 국가 -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해설] ① [X] [조문] 국가면제협약 제16조 제1항.

▶ 국가면제협약 제16조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는 선박】

1. 관계국들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국가는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원인의 발생시 선박이 비상업적 공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타국의 권한 있는 법정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② [X] [조문] 국가면제협약 제20조.

▶ 국가면제협약 제20조 【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강제조치에 미치는 효과】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강제조치에 대한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제7조에 의한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X] [조문] 국가면제협약 제8조 제3항.

▶ 국가면제협약 제8조 【법정에서의 소송 참가의 효과】

3. 국가의 대리인이 타국의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경우, 이는 전자의 국가가 그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④ [O] [조문] 국가면제협약 제2조 제2항.

▶ 국가면제협약 제2조 【용어의 사용】

1. 본 협약의 목적상,
(c) “상업적 거래”라 함은,
(i)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모든 상업적 계약 및 거래;
(ii) 차관 및 기타 금전적 성격의 거래를 위한 모든 계약 (이는 그러한 차관 및 거래에 관한 보증 또는 배상의 채무를 포함한다);
(iii) 기타 상업적, 산업상의, 무역상의 또는 직업적 성격의 계약 및 거래(단, 사람의 고용을 위한 계약은 제외함)를 의미한다.
2. 계약 또는 거래가 제1항(c)에서 언급한 “상업적 거래” 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계약 및 거래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 또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그 같이 합의하거나 또는 법정지국의 실행상

그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이 그 비상업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④

12.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 ②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 ④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 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분류] 제2편 국제기구 - 제2장 국제연합 - 제2절 UN헌장

[해설] ① [O] [조문] UN헌장 제10조

▶ UN헌장 제10조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어떠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떠한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② [O] ③ [X] [조문] UN헌장 제11조 제2항. UN헌장 제35는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내용이다.

▶ UN헌장 제11조

2.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다.

▶ UN헌장 제35조

2.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그 분쟁에 관하여 미리 수락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④ [O] [조문] UN헌장 제15조 제1항.

▶ UN헌장 제15조

1.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이 보고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다.

[정답] ③

1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②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③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④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분류]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제2장 조약

[해설] ① [O]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② [O] ③ [X]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2조.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는 문맥과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a)호).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 ④ [O] [조문]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3조 제1항.

▶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33조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1. 조약이 2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 의하여 정본으로 확정된 때에는 상위가 있을 경우에 특정의 조약문이 우선함을 그 조약이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언어로 작성된 조약문은 동등히 유효하다.

[정답] ③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상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상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 ②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 ③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 ④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분류] 제8편 국제경제법 - 제2장 WTO협정 - 제3절 WTO의 기본원칙(법원칙)

[해설] ① [O] [조문] GATT 제11조 제2항 (c)(iii)호.

▶ GATT 제11조 【수출제한의 일반적 폐지】

1. 계약국은 다른 계약국 영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계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식료품 또는 수출 계약국에 불가결한 상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
 - (b)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 (c) 농업 또는 어업 상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의 여하를 불문한 수입제한으로서 다음 목적을 위한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 (i)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가된 동종 국내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상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 (ii)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상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수입산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국내소비자의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제거하는 것, 또는
 - (iii)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한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상품에 있어서 동 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것.

본 항(c)에 따라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 중에 수입을 허용할 상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이러한 수량 또는 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1)에 의하여 과한 제한은, 제한이 없는 경우 양자간에 성립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비율보다 수입총계와 국내생산총계간의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계약국은, 동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에 존재하였던 비율과 해당 상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영향을 줄지도 모를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② [O] [조문] GATT 제12조, 제18조 B.

▶ GATT 제12조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국은 자국의 대외자금사정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의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허가 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GATT 제18조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원조】

9. 본조 제4항 (a)의 범주에 속하는 계약국은, 자국에 대외 자금사정의 보호와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항에서 12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수입허가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입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③ [O] [조문] GATT 제11조 제2항 (a)호.
- ④ [X] [조문] GATT 규정상 수량제한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답] ④

15 15.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 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 ③ 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 ④ 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제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류]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제1장 해양법 - 제2절 UN해양법협약

[해설] ① [O] [조문]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섬제도】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 [X] [조문] UN해양법협약 제13조 제2항. 이 조문의 반대해석상 간조노출지 전부가 본토나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

▶ UN해양법협약 제13조 【간조노출지】

2. 간조노출지 전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조노출지는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 ③ [O] [판례]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부는 간조노출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암조인지 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외부적인 추가나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④ [O] [판례]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ICJ는 해안선의 일반적 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뱀섬이 경계획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정답] ②

16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 ②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분류] 제2편 국가 - 제3장 국가책임

[해설] ① [X] [조문] 국가책임초안 제27조 (b)호. 국가책임초안 제5장상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주장은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책임초안 제27조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을 주장하는 결과】

이 장에 따른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의 주장은 다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a)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한도의 경우 문제의 의무의 준수
- (b) 문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어떠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

② [O] [조문]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제1항.

▶ 국가책임초안 제25조 【긴급피난】

1. 긴급피난은 다음 행위의 경우 외에는 당해 국가의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에 의하여 주장될 수 없다.

- (a) 그 국가에게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 대항하여 본질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 (b) 그 의무 실행의 상대가 되는 국가나 국가들 또는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의 본질적인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③ [O] [조문] 국가책임초안 제21조.

▶ 국가책임초안 제21조 【자위】

국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가 국제연합헌장과 일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자위조치를 구성하는 경우 조각된다.

④ [O] 국가책임초안 제26조.

▶ 국가책임초안 제26조 【강행규범의 준수】

이 장의 어떤 것도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국가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17 17.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② 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 ③ 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 ④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분류] 제2편 국가 - 제1장 승인론 - 제2절 국가승인

[해설] ① [O] [이론]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승인국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② [O] [이론] 신생국이 파견한 영사에게 인가장을 발급하거나, 신생국에 자국영사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는 것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우호통상(항해)조약 등 포괄적 (양자)조약의 체결 - 외교관계의 수립, 미승인국 외교사절의 공식접수, 상임외교사절의 교환 -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외무부장관의 기자회견 - 신생국 국기 승인, 국기에 대한 예의표시 - 신생국이 파견한 영사에게 인가장 발급, 신생국에 자국영사의 인가 요구 - 신생국에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 - 국내법원의 제소권 인정 - 국가원수의 국빈자격 방문, 대통령의 공식 접견 - 미승인국의 영역주장에 대한 합법성 인정	인가장 없는 영사의 파견 및 접수, 미승인국가를 포함한 다자간 협정의 체결, 미승인국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출석, 미승인국의 국제조직 참가, 단순한 통상교섭행위, 정부관리들에 의한 공식 교섭행위, 무역사절단의 파견·교환, 통상대표부의 설치, 통상대표의 파견·접수, 임시사절의 파견·접수, 범죄인 또는 납치된 승객 등의 인도, 반란단체와의 교섭, 국제적 청구의 제기과 보상금 지급, 미승인국가의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여러 가지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문제에 관한 공식 또는 비공식접촉의 유지, 특정문제에 관한 의사교환, 미승인국 법률의 효력 인정, 정식국호의 사용, 외교적 편의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협정의 체결, 고위급 회담의 개최, 불승인인사를 명백히 한 상태에서 양자조약의 체결, 단순한 사무적 내용의 양자조약 체결, 포로협정의 체결, 신사협정의 체결.

- ③ [X] [이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화민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였으나,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의 내전 결과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 섬으로 옮겨가고 베이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던바, 이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를 중화민국 정부로 할 것인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부승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O] [이론] 신화원국의 UN가입과 국가승인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정답] ③

18 18.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 ②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 ③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분류] 제8편 국제경제법 - 제2장 WTO협정 -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해설] ① [O] [조문]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기 나라의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DSU 제21조 제3항).

② [X] [조문] 모든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DSU 제21조 제6항).

③ [O] [조문]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해

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 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DSU 제22조 제2항).

- ④ [O] [조문]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DSU 제22조 제4항).

[정답] ②

19 19.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국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B국 상선을 타고 C국 내수에 들어온 경우, C국은 A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다면 B국 상선에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은 내수 내에 있는 외국상선에 대해 자국의 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연안국의 재판소는 타국인 D국 선박회사의 제소에 따라 내수 내에 있는 또다른 타국인 E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 ③ 공해상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배출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입항한 경우, 항만국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조사하고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연안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은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분류] 제2편 국가 -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 제1절 국가관할권
[해설] ① [O] [이론] 연안국은 내수 내의 외국 상선에 대해 자국의 민·형사(입법 및 집행)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C국 내수에 들어온 B국 상선에 대하여 C국은 진입하여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A국의 범죄인인도 요청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② [O] [이론] 연안국은 내수 내의 외국 상선에 대해 자국의 민·형사(입법 및 집행)관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E국의 선박을 억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국 선박회사의 제소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③ [O] [조문, 이론] UN해양법협약 제27조 제5항. 이 조문의 반대해석상 해양환경의 보호와 관련된 경우,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라도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내수인 항구에 입항한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UN해양법협약 제27조 【외국선박 내에서의 형사관할권】

5. 제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규정된 경우나 제5부(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라 제정된 법령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안국은 외국선박이 외국의 항구로부터 내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그 선박이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하기 위하여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④ [X] [조문] UN해양법협약 제27조 제2항.

▶ UN해양법협약 제27조 【외국선박 내에서의 형사관할권】

2. 위의 규정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중인 외국선박 내에서의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20 2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 ②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 ③ 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 ④ 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분류] 제3편 국제기구 - 제2장 국제연합 - 제2절 UN헌장

[해설] ① [O] [조문]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3조.

▶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3조

국제연합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행정적·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징발·몰수·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X] [조문]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조.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국제연합 직원의 그 가족들에게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및 편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8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 외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본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 및 편의가 부여된다.

③ [X] [조문]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8조 (가)호. 국제연합의 직원은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8조

국제연합의 직원은,
(가)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나) ~ (사) 각호 생략

④ [X] [조문]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1조. 일회적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1조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파견되는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회의장소로 여행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가) ~ (사) 각호 생략

[정답] ①